

光州廣域市西區地域保健醫療計劃(案)

審 查 報 告 書

1996 年 12 月

企劃總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6年 12月16日 光州廣域市 西區廳長 提出
및提出者
- 나. 回附日字 : 1996年 12月 16日
- 다. 上程日字 : 第61回 西區議會(定期會) 會期中
第1次 企劃總務委員會(1996年 12月 23日 上程議決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保健所長 白 洛 朱)

가. 提案 事由

-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 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보건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.
-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, 보건 의료 관련기관,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토록 함.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토록 함.

- 16 -

[미수납사유별 현황]

(단위 : 천원)

과 목	미수납액	사 유 별		
		채무자거소불명	재력부족	재산압류중
합 계	1,073,614	430,837	245,113	397,664
지방세수입	464,710	135,640	73,613	255,457
세외수입	567,799	268,200	157,392	142,207
지정재원	41,105	26,997	14,108	-

○ 미수납액 사유는 채무자거소불명이 40.13%인 4억 3,083만 7천원, 재력부족이 22.8%인 2억 4,511만 3천원, 재산압류 중인 경우가 37.0%인 3억 9,766만 4천원을 차지하고 있음.

□ 특별회계

○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4억 2,910만 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7.4%인 98억 9,886만 4천원이고, 수납액은 86.7%인 85억 7,781만 8천원임.

○ 미수납액은 15.4%인 13억 2,104만 6천원이며, 불납결손액은 없음.

3. 세 출 결 산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예 산 현 액	지 출 액	익년도이월액	불 용 액
합 계	69,165,094	75,824,299	59,939,328	7,604,544	8,280,426
일반회계	60,735,989	67,395,194	53,481,553	6,902,624	7,011,016
특별회계	8,429,105	8,429,105	6,457,775	701,920	1,269,409

○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한 1995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8억 2,429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9억 3,932만 8천원으로 79.1%가 집행되었고, 158억 8,497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, 이는 다음연도 이월액 76억 454만 4천원과 불용액 82억 8,042만 6천원임.

□ 일 반 회 계

[199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예 산 현 액	지 출 액	다음연도이월액	불 용 액
합 계	60,735,989	67,395,194	53,481,553	6,902,624	7,011,016
의 회 비	900,215	900,215	824,483	0	75,731
일반행정비	25,400,711	25,775,325	23,140,417	892,054	1,742,853
사회복지비	19,020,484	20,801,844	17,066,001	1,964,597	1,771,245
산업경제비	678,146	678,146	669,703	0	8,442
지역개발비	12,406,368	16,985,815	10,439,173	4,045,973	2,500,668
문화체육비	507,664	507,664	486,562	0	21,101
민방위비	80,346	80,346	57,835	0	22,510
지원기타경비	1,742,055	1,665,838	797,377	0	868,461

- 18 -

-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673억 9,519만 4천원에 대하여 79.4%인 534억 8,15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, 69억 262만 4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, 70억 1,101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, 그 원인을 보면
 - 계획변경 취소로 1억 3,746만원
 - 예산집행사유미발생으로 14억 8,382만 9천원
 - 예산절감으로 17억 1,830만 5천원
 - 예산집행잔액으로 32억 1,469만 8천원
 -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억 8,386만 8천원임.

○ 불용액 70억 1,101만 7천원은 예산현액의 10.4%를 차지하고 있음.

□ 특 별 회 계

[1995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예산현액	지 출 액	다음연도이월액	불 용 액
계	8,429,105	8,429,105	6,457,775	701,920	1,269,409
의료보호특별회계	2,265,756	2,265,756	2,264,557	0	1,198
공동주택건설특별회계	4,279,388	4,279,388	3,559,128	669,530	50,729
주차장특별회계	1,883,961	1,883,961	634,089	32,390	1,217,481

○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4억 2,910만 5천원에 대하여 76.6%인 64억 5,77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, 7억 192만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, 12억 6,940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.

- 불용액 12억 6,940만 9천원은 예산현액 84억 2,910만 5천원의 15.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와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 관련 토지매입 및 시설비 등 관련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관련사업비 12억 19만 1천원이 불용처리된데 의한 것임.

4. 예산의 이용 · 전용 · 이체

- 예산의 이용 · 전용은 없음.
- 1995년 3월 1일자로 남구가 분구됨에 따라 예산회계법 제 36조 2항과 3항에 의거,이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억 3,976만 2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함.

5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합 계		명 시 이 월		사 고 이 월	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합 계	43	6,935,014	21	4,118,373	22	2,816,641
일반회계	42	6,902,624	21	4,118,373	21	2,784,251
특별회계	1	32,390	-	-	1	32,390

-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한 금액은 예산현액 758억 2,429만 9천원의 9.15%인 69억 3,501만 4천원임.